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12. 18.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7일

나. 제출자 : 김길자 의원 외 7명

다.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건설위원회(2015.1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청장 및 사회복지관의 책무(안 제5조, 제6조)
-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7조, 제8조)
- 지원사업 및 신분보장을 규정(안 제9조, 제11조)
-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 대행(안 제10조)

○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포상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1)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규정

-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상 신분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고용안정 및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이 도달하도록 규정

2) 사회복지사 등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

- 이 중 지원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인권 및 신변 보호 사업 등이 있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대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4) 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 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

○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
----------	-----

발의연월일 : 2015년 11월 일

발 의 자 : 김길자 의원 외 7명

1. 제안이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회복지관의 책무(안 제5조, 제6조)

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안 제7조, 제8조)

다. 지원사업 및 신분보장을 규정(안 제9조, 제11조)

라.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
대행(안 제10조)

마.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포상 사항 규정(안 제12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11. 6 ~ 11. 12) : 의견 없음.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법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분보장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4. 인권 및 신변 보호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대행)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제11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기관과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항상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01. 01일로부터 시행한다.